

제 1 절 전투원칙

454. 목표확인

전투행위에 있어서 목적물과 목표의 군사적 성격은 확인되어야 한다.

455. 목표확인

군사적 중요성이 없는 상선과 민간항공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56. 대안(代案)

민간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무가 허용하는 한 동등한 대체 목적물과 목표가 선택되어야 한다.

457. 예방조치

민간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 화력사용의 순간과 방향, 사람들의 구조를 위한 비군용선박의 급박한 파괴보다는 무력화 등).

458. 비례성

예방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제5장 제1절을 보라). 보다 큰 군함이나 비군용기를 공격함에 있어서 민간인의 회생이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59. 경고, 권고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위험에 처한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에 대해 경고와 권고(예컨대 대피소 이동)가 구두 또는 신호로 행해져야 한다.

제 2 절 외국선박

460. 원칙

해상에서는 군사목적물인 선박만 공격할 수 있다.

461. 군사목적물의 예:

- 1) 호위하의 선박
- 2) 군사적 가치있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 3) 적군을 수송하는 선박
- 4) 봉쇄를 파괴하는 선박

462. 군함의 국적표시

전통적으로 기(旗)는 군함의 국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오늘 날, 국적의 인식은 선박의 유형이나 종류 등 다른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따라서 가짜 깃발의 사용은 낡은 방법으로서 권장되지 않는다.

463. 포획과 공격으로부터 면제되는 선박

다음의 선박들은 포획되거나 공격당하지 않는다.

- 1) 병원선 및 그 구명정, 소형선박
- 2) 해안구조선
- 3) 특별협정에 운행하는 카르텔선
- 4) 안전통과가 허용된 선박
- 5) 소형 연안여선
- 6) 종교, 과학 또는 자선임무를 띤 선박
- 7) 군사적 중요성이 없는 기타 선박

포획면제는 이러한 선박들의 기구, 장구, 삭구 및 적하에 까지 미친다.

464. 의심스러운 선박

어떤 선박이 군사목표인지 분명치 않을 때에는 그 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시켜 수색할 수 있다. 정지하기를 거절하거나 방문수색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경고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

465. 중립군함

중립군함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이 군사목적물로 되지 않는 한 원

칙적으로 교전국에 있어서는 비군사목적물이다.

제 3 절 외국항공기

466. 원칙

국가영공 접근에 대한 금지와 제한에 따라, 적 군항공기를 제외한 외국 항공기는 공격할 수 없다.

467. 예외

다음의 경우 외국 민간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다.

- 1) 외국군항공기에 의하여 호위되고 있을 때
- 2) 이 장(章)에서 기술된 요건하의 항공기가 홀로 비행중일 때

468. 착륙명령 및 검열

외국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검열목적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착륙하거나 착수(着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검열결과 그 항공기가 군사요원이나 군사적 가치있는 물건을 싣고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쟁범을 위반하는 경우(예컨대 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데 쓰여지거나, 금제품(禁製品)을 운반하거나, 또는 이전의 특수협정조건을 위배하는 등)에는 그 항공기는 포획되어 전리품이 된다.

469. 공격

만약 외국 민간 항공기가 항로수정 또는 착륙이나 착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공격할 수 있다.

470. 중립 군항공기

외국 민간 항공기에 관한 이 장의 조항들은 중립 군항공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 4 절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

471. 원칙

전투행위기간 중,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정한 당국이나 부대장의 통제하에 남아 있어야 한다. 비무장화, 중요성 또는 예속범위 등에 관한 가능한 변경은 적절한 시간내에 알려져야 한다.

472. 특별경고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제지대 또는 그 유사지역에 접근하거나 들어오는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격하기 전에 개별적인 경고가 행해져야 한다.

473. 자신의 위험하의 항해

민간선박은 공해상 또는 그 안에서 일지라도 군사작전지역 또는 배제지대나 그 유사지역을 피해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에 접근하거나 들어오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위험으로 항해하는 것이다.

제 5 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474. 원칙

특별히 보호되는 요원과 시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확립된 수송수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475. 요원 (G.I, 19; G.II, 37; G.P.1, 62)

특별히 보호되는 요원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민간의 방어행위를 방해하는 부득이한 군사적 필요성 등)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활동을 끌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의 임무와 순수한 활동은 확인할 수 있다.

무장한 적요원은 무장해제 할 수 있다.

476. 건조물: 원칙

특별히 보호되는 건조물은 접촉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 그 내용물과 효과적인 사용은 검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77. 건조물: 표시된 문화재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공격면제가 해제된 표시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예컨대 임무에 의하여 요구된 이상의 파괴나 점령 금지 등).

이미 행해지지 않았다면, 식별표지는 공격면제가 해제된 문화재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최소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478. 수송수단: 원칙 (G.I, 36; G.II, 31; G.IV, 22; H.CP, 12-14; G.P.I, 23, 30)

특별히 보호되는 수송수단은 필요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임무, 내용 및 효과적인 사용은 검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예컨대 항공기에 대하여 이러한 검열을 위하여 착륙명령을 할 수 있다3).

479. 수송수단 : 병원선, 해안 구조 항공기 (G.II, 22, 27, 29, 30)
병원선(그 구명정 또는 소형선박을 포함)과 해안 구조선박은 포획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병원선과 해안구조선은 전투원의 이동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6 절 보호지대

480. 원칙
지역관할 부대장은 그 부하들로 하여금 부근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지대(保護地帶)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481. 보호지대의 포기
부득이 보호지대를 적에게 포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역관할 부대장은 그 지역을 확실히 그리고 아무런 방어없이 포기하여야 한다.

포기는 시간적 단계적으로 사전에 계획되고 민간당국에 미리 알려져야 한다.

482. 보호지대의 접수(接受)

적으로부터 보호지대를 접수할 때는 지역관할 부대장은 그 지역이 전투 없이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로부터 비무장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지위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비방어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적의 통제하에 떨어진 다른 장소와 같이 점령지가 된다. 따라서 “방어되지 않는” 지위는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임시적일 뿐이다.

제 7 절 전투희생자의 수색

483. 희생자 수색: 원칙 (G.I, 15 ; G.II, 18)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1) 부상자와 난선자를 찾아 수용하고 치료하며, 2) 사망자를 찾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84. 희생자 수색: 민방위 (G.P.I, 62)
민방위부대와 그 구성원은 특히 민간인 피해가 있을 때는 희생자수색에 참여하여야 한다.

485. 희생자 수색: 자선요구 (G.I, 18 ; G.II, 21 ; G.P.I, 17)
부대장은 민간인들에게 국가적십자나 적신월사(赤新月社) 등을 도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중립 상선, 요트 기타 선박의 선장에게 부상자와 난선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것과 사망자를 수용하여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86. 희생자 수색: 민간인 (G.I, 18 ; G.II, 21 ; G.P.I, 17)
민간인과 국가적십자 또는 적신월사와 같은 원조단체는 그 자신의 주도로 부상자와 난선자를 찾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누구도 처벌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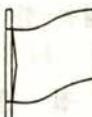
제 8 절 전투희생자의 포획

487. 전투력을 상실한 적 (G.P.I, 41, 42)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또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야만 할 사람은 공격할 수 없다 (예: 항복하거나, 부상당한 자이거나, 사망한 자나, 해상에서 조난당한 자나, 조난 중에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자 등).

488. 항복: 원칙

항복하고자 하는 의사는 손을 들거나, 무기를 던지거나, 백기를 소지하는 등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89. 항복: 조난 중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경우 (G.P.I, 42)

조난중에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탈출한 자는 그가 적대행위를 취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기 전에 항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90. 포획 (G.III, 4 : G.P.I, 41, 44)

포획이라 함은 항복에 의하여서건 아니건, 군부대, 적의 군인, 군 또는 민간경찰 심지어는 민간인 등 적 조직체의 세력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 9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491. 원칙

지역관할 부대장, 특히 최하급 전술부대의 지휘관들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민간인 및 민간목표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곳에서 민간당국이나 또는 민간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492. 협력의 예

협력의 예로서는 1)도로 또는 통로로부터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일정한 지역으로부터 소개시키기 위한 것, 2) 대피소, 구호소, 구호역 등과 같은 상호정보를 위한 것, 3) 인구밀집지역,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및 지역 등과 같은 상호행위를 위한 것 등이 있다.

493. 특별히 보호되는 요원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특별히 보호되는 요원들에게는 그 활동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허용되어야 한다.

494. 구호: 원칙 (G.IV, 17, 23, 30 : G.P.I, 70)

포위된 지역에 대한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구호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구호통로, 장비 및 요원과 같은 모든 지원이, 비록 적 민간인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495. 구호: 군사원조 (G.IV, 23 : G.P.I, 70)

지역관할 지휘관들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할 때는 그 한도내에서 구호활동에 대해 수송, 호위, 경비 등과 같은 군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

제 1 절 적 전투원

496. 원칙 (G.III, 5, 13 : G.P.I, 44)

항복에 의하여서건 아니건 포획된 전투원은 전쟁포로이며 공격할 수 없다. 전쟁포로의 지위와 대우는 포획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전쟁포로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전쟁포로로서의 대우는 그 당시에 적대행위를 피하고 도주하려 하지 않는 생포된 전투원에게만 적용된다.

497. 구체적 대우 (G.III, 13)

포획된 전투원은, 1) 수색하여 무장해제시키고, 2) 필요한 경우 보호하고 치료하며, 3) 후송하여야 한다.

498. 수색: 무장해제 (G.III, 18)

무장해제는 탄약, 지도, 명령, 원거리통신 자료 및 부호 등과 같은 군사적 가치있는 장비와 물건을 수색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499. 수색: 포획된 자에게 남겨둘 물건 (G.III, 18)

다음의 물건들은 포획된 자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 1) 신분증, 인식표 등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건
- 2) 의복, 급식 및 개인적 사용을 위한 휴대품
- 3) 헬멧, 가스마스크 등 개인보호를 위한 물건

500. 안전, 보호, 치료 (G.III, 13, 19, 20, 50)

후송을 기다리는 동안 포획된 자는 1) 불필요하게 전투의 위험하에 노출시키거나, 2) 군사적 성격이나 목적을 갖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당할 수 없으며, 3) 폭행, 모욕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4) 응급처치 등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501. 후송 (G.III, 19)

후송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502. 지위가 위험스러운 경우 (G.III, 5 : G.P.I, 45-47)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전쟁포로와 같이 처리되어 후송되어야 한다. 그들의 지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포획여건에 관하여 후송계통을 통해 통보할 것이 권장된다.

503. 후송이 불가능한 경우 (G.P.I, 41)

고립되어 작전하는 소규모 정찰대와 같이 포획한 부대가 포획된 전투원을 후송하거나 후송시 까지 보호하고 경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

대는 그들을 석방하고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 1)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그 자신의 안전
- 2) 식수제공, 음식제공, 구조대, 위치표시, 정보제공 등 석방된자의 안전

제 2 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504. 원칙 (G.I, 12; G.II, 12)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치료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505. 상선(商船)에 의하여 구조된 난선자

난선자를 구조하여 선상에 싣고 있는 상선은 그 사실을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506. 부상전투원, 병든 전투원 및 난선전투원 (G.I, 14; G.II, 16)

포획된 부상전투원, 병든 전투원 및 조난전투원은 전쟁포로로서 전쟁포로에게 인정되는 대우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507. 후송 (G.I, 12; G.II, 12; G.III, 19)

적절한 경로를 통한 후송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508. 일시적 억류 (G.III, 19)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후송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떠는 사람만 일시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

509. 부상자의 유기 (G.I, 12)

부상자나 상병자를 부득이 적에게 유기할 수 밖에 없는 부대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그들의 치료를 도울 요원과 기구의 일부분을 남겨 두어야 한다.

510. 기록 (G.I, 16; G.II, 19)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인적 사항이나 부상 및 질병에 관한 특이사항 등 부상자와 상병자의 신분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는 기록되어야 한다.

제 3 절 사망자

511. 신분확인 (G.I, 17; G.II, 20)
사망자의 신분은 확인되어야 한다.

512. 매장, 화장, 수장 (G.I, 16; G.II, 19, 20)
사망자는 신분확인후 전술적 및 위생 등 기타 상황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매장, 화장 또는 수장(水葬)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은 위생상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사망자의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13. 신분확인 수단: 원칙 (G.I, 16, 17; G.II, 19, 20)
사망자의 신분증은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이중인식표를 가지고 사망한 경우, 한 쪽은 시체 또는 유골함에 남겨두고 다른 한 쪽은 수거하여야 한다.

514. 신분확인 수단: 육상 (G.I, 17)
단일인식표를 가지고 사망한 경우 그것을 시체 또는 유골함에 남겨두어야 한다. 묘지는 즉석에서 나무로 만든 나무 십자가 또는 그 유사한 것으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5. 신분확인 수단: 해상 (G.II, 19)
해상에서 인식표를 하나만 가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을 수거하여야 한다.

516. 유골 및 개인소지품 (G.I, 17; G.II, 37)
유골과 개인소지품은 수거하여 후송하여야 한다.

517. 시체 후송
사정에 의하여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지 않은 시체는 후송하여야 한다.

518. 보고 (G.I, 17; G.II, 20)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사망과 후속조치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적 군의무요원

519. 원칙 (G.I, 19; G.II, 37)
포획된 적 군의무시설과 의무수송시설 내의 의무요원은 점령군이 그 스스로 그 시설내에서 발견된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하여 필요한 간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 이들 시설내의 의무요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20. 법적 지위 (G.I, 28; G.II, 37; G.III, 33)
포획된 적 군의무요원은 전쟁포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포로의 취급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모든 규정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한다.

521. 병원선 (G.II, 36)
병원선의 의무요원과 승무원은 그 선박이 임무수행중에는 포획할 수 없다.

522. 임시 의무요원 (G.I, 25, 29)
포획된 적의 임시의무요원은 전쟁포로이이지만, 필요가 생기는 한 그들의 의무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절 적 군종요원

523. 원칙 (G.I, 19, 28; G.II, 37)

포획된 적 군종요원은 점령군이 스스로 필요한 정신적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자유로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24. 유추 (G.I, 28; G.II, 37; G.III, 33)

포획된 적 군의무요원에 관한 규정은 포획된 적 군종요원에게도 적용된다.

525. 병원선 (G.II, 36)

병원선에 있는 군종요원은 그 선박이 임무수행중에는 포획할 수 없다.

제 6 절 적 군사목적물

526. 전리품 (G.III, 18)

포획된 적 군사목적물은, 신분증명수단, 의무 및 종교적 목적물과 피복, 급식 및 포획된 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리품이 된다(예: 적군요원으로부터 수거한 군사적 가치있는 물건, 기타 무기, 수송수단, 비축물건 등 군사적 자재).

전리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점령국에 속하고 개별적 전투원에게 속하지 않는다.

527. 의무시설: 원칙 (G.I, 33)

포획된 적 군의무시설 및 자재는 접수할 수 있으나, 부상자와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그것들이 필요로 되는 한 의무목적으로부터 전용할 수 없다.

528. 의무시설: 예외 (G.I, 33)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획된 적의 움직일 수 없는 군의무시설은 부상자와 병자의 복지에 관한 사전조정이 행해진다면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29. 의무수송: 원칙 (G.I, 35; G.II, 22, 27; G.P.I, 22, 23, 30)
포획된 적 군의무수송시설로서 더 이상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위해 필요치 않는 것은 전리품으로 한다. 이때 의무수송시설 표지는 제거되어야 한다.

다음의 의무수송시설은 포획할 수 있다.

- 1) 지상 의무차량
- 2) 병원선, 그 구명정 및 소형선박, 해안구조선박을 제외한 의무선박
- 3) 지상 또는 수상에 머무는 동안 포획하거나 몰수한 의무항공기

530. 의무수송: 항공기 (G.P.I, 30)

군의무항공기로만 임무부여된 포획항공기는 그 후에도 의무항공기로만 쓰여질 수 있다.

531. 움직일 수 있는 의무자재 (G.I, 33)

포획된 움직일 수 있는 적 군의무자재는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위하여 남겨놓아야 한다.

532. 종교물 (G.I, 33)

포획된 적 군종목적물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자재와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적과의 비적대적 접촉

제 1 절 일방적 조치

533. 정보, 경고

현재의 전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하

여, 사격개시 또는 주어진 방향으로의 이동 전에 민간인들에게 대한 경고, 위험지역으로 접근하는 의무항공기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이 적측에 통보 또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534. 항복권고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 위반의 증거, 독특한 표시를 보다 잘 보이게하기 위한 것 등과 같이 적측의 전쟁법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항복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 2 절 전투중지

535. 현지협정 (G.I, 15; G.II, 18)
부상자와 난선자의 수색, 이동, 교환, 후송하기 위하여 현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536. 포위 또는 점령지역 (G.I, 15; G.II, 18)
점령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이동시키거나, 의무 및 군종요원과 그 장비들의 통로를 위하여 역시 현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537. 중립지대 (G.IV, 15)
다음의 사람들에게 구별없이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에 중립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1) 부상자와 병자
- 2)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만간인과 그 지대에 살면서 군사적 성격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민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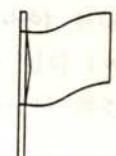
제 3 절 절차

538. 일방적 통보 (H.CP, 11; G.P.I, 25, 57)

지휘관들은 정보, 경보, 또는 항복권고 등의 일방적인 통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예: 최하급부대 수준에서 메가폰이나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방법).

539. 지휘관간의 직접적인 접촉 (G.I, 15; G.II, 18; G.IV, 15)
적군간의 접촉은 지휘관의 관여하에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접촉은 모든 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540. 백기 또는 그 유사한 것을 소지한 자 (H.IV.R, 32-34)
백기(휴전의 깃발)를 소지한 사람이나 적과 접촉하도록 특별히 명령받은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은 정보수집 목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지휘관은 항상 휴전의 백기를 소지하거나 기타 그 유사한 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억류할 수 있다.



541. 중개자를 통한 접촉 (G.I, 8-10; G.II, 8-10; G.IV, 9-11; H.CP, 21, 23; G.P.I, 5)

휴전의 백기 소지자 또는 그 유사한 사람을 통한 지휘관간의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지휘관들은 이익보호국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중개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542. 협정: 원칙 (G.I, 6; G.II, 6; G.IV, 7; G.P.I, 27)
적대군의 지휘관들은 언제든지 협정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전쟁희생자들에 관하여 국제조약들이 규정한 바와 반대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543. 협정: 현지협정 및 일시적 약정 (G.I, 15; G.II, 18; G.P.I, 27)
지역적이고 간단한 약정 또는 긴급한 협정은 구두로 체결될 수 있다(예

컨대, 전투행위 직후의 부상자 수색 또는 의무항공기가 적이 통제하고 있는 작은 지역 상공을 통과하기 위한 협정 등).

544. 협정: 장기약정 (G.I. Annex I; G.IV, 15; G.P.I, 27, 59, 60)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가 큰 협정은 문서로 체결되어야 한다(예: 중립지대, 방어되지 않는 장소, 의무항공기의 적이 통제하고 있는 넓은 지역 상공 통과, 포위된 지역으로부터의 소개(疏開) 등).

이러한 협정을 위하여 병원지대, 비무장지대, 비방어지역 및 장소 등과 같이 전쟁법에 의하여 예견된 상세한 조항들로부터 어떤 차상을 얻어낼 수 있다.

제 4 장 전투후의 조치

제 1 절 군사적 조치

545. 원칙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지휘관과 전투원들은 민간인들을 위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6.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의 복귀

임시적으로 이동된 사람과 물건들은 원래 있던 장소로 복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547. 군사적으로 사용된 물건의 복귀

전투를 위해 군요원에 의하여 대부 또는 징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원래 있던 장소로 복귀되어야 한다.

548. 전투지역의 복구

전투지역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예: 장애물 및 지뢰 등과 같

은 위험물의 제거, 민간인들에게 필수적인 통로의 보수 등).

제 2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549. 원칙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지역관할 부대장은 민간인들을 위해 정상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550. 긴급협력 (G.I, 18; G.II, 21; G.IV, 16; G.P.I, 17, 33, 62)

긴급협력은, 1)희생자와 실종자의 수색, 2)희생자 구조, 3)희생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긴급협력은 자발적으로 최하급 부대에서도 현지에서 할 수 있다(예: 육상 또는 해상에서의 자선의 호소, 민간인 또는 국가적십자사나 적신월사, 민방위 등과 같은 민간기구의 활동 등).

551. 장기간의 협력: 필요성, 우선순위

장기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인들의 필요성이 거론되어야 하고, 그 다음 방역, 의무, 매장 및 화장, 보급, 구호, 공공질서 및 경찰당국 등 권한있는 민간당국과의 협정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552. 장기간의 협력: 지휘책임

대규모의 군사지원활동을 위하여, 상하관계, 협력관계, 인원 및 물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 명백한 지휘책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 7 편 수 송

서 론

이 편에서는 군대에 대한 물자의 보급에 관하여 그것이 전쟁법에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다루고,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수송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수송행위는 수송원칙, 개별적 또는 합동적인 군사, 의무, 민간 수송, 그리고 민간당국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은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을 위하여 후송도중에 취하여야 할 수단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보급은 직접조달, 사용될 수단과 계통 및 군과 의무 및 민간분야 간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의무수송은 표지, 임시수송 등 일반적인 문제들과, 육상, 해상 또는 공중운송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수송행위

제 1 절 군수송원칙

553. 원칙

수송은 최전방 부대와 최후방 군수기지 간의 모든 사람과 물건의 운반을 취급한다.

554. 일반 수송방침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자는 일반 수송방침을 수립할 책임을 진다. 수송방침은 다양한 보급 및 후송계통, 수송수단의 사용과 통제책임을 정한다. 수송정책은 위장요건의 변화와 전후방부대간의 통신보안 등과 같이 규정 및 절차로 될 수 있다.

555. 각 지휘관의 책임

모든 지휘관은 예컨대 하역구역이라든가 그 구역내의 차량통과 등 그 책임구역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56. 통상 계통

하급 전술부대 수준에서의 수송은 보통 대대와 소대 같은 지휘계통을 따른다. 지휘관은 의무 수송수단과 다른 수송수단이 명백하게 구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57. 계통의 분리

편제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수송은 다음과 같이 분리된 계통을 따라야 한다.

- 1) 전쟁포로 및 적의 비의무물자를 후송하기 위한 군수(軍需)
- 2) 의무보급, 부상자와 병자의 후송, 포획된 적 군의료요원, 군종요원 및 종교를 등의 후송을 위한 의무(醫務)
- 3) 신원자료, 사망자의 유류품 등을 위한 인사(人事)
- 4) 전술적 이익있는 서류 등을 위한 정보(情報)

558. 계통의 변경

수송계통의 변경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예: 후송도중 갑자기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자, 건강한 전쟁포로들과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치료받은 부상자, 건강한 자

또는 부상자로서 갑자기 사망한 자 등).

제 2 절 군, 의무 및 민간인의 분리수송

559. 수송로 및 계통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자 (하급지휘관들의 경우 그 책임구역에 관하여)는 전략적 전술적 상황이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무 군수송과 의무수송을 위한 별도의 수송로 및 계통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송로와 계통은 전략적 및 전술적 상황이 허용할 경우 민간계통과 구별되어야 한다.

560. 비의무 군수송수단

비의무 군수송수단에 의한 비의무 군요원 및 목적물은 전쟁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561. 민간 교통수단
민간수송수단에 의한 민간인과 민간 목적물은 전쟁법에 의하여 허여된 보호를 받는다.

562. 의무 수송수단
의무 수송수단에 의한 의무요원 및 의무목적물과 부상자, 병자, 난선자 등에 대한 수송은 의무지원에 대한 전쟁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제 3 절 군, 의무 및 민간인의 합동수송

563. 수송로 및 계통
비의무 군수송과 의무 및 민간수송이 공히 통상의 수송로 및 계통을 사용하는 곳에서 권한있는 지휘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을 규제하여야 한다.

564. 수송수단

동일한 사람이나 물건의 수송을 위하여 첫번째 트럭, 두번째 선박, 세번째 항공기와 같이 서로 다른 비의무 군용, 의무 및/또는 민간수송수단을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권한있는 지휘관은 이의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예:비의무 군요원, 의무요원 또는 민간요원의 배치, 하역구역내에서의 요원들의 행위, 위장요건, 지휘책임 및 구별되는 신호 및 표지 등).

565. 통과장소

통과장소와 하역구역은 명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비의무 군수송수단, 의무 및/또는 민간수송수단의 동시적 출현은 최단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큰 통과장소 내에는 비의무 군수송요원 및 수송수단과 의무 및 민간요원과 수송수단의 구체적인 위치를 따로 배정하여야 한다. 통과장소의 지휘관은 위장의 사용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 4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566. 원칙

일반적인 지휘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송에 관하여 민간당국과의 협력 및 민간당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

567. 우선순위

그 지시는 예컨대, 첫째로 부상자, 병자 및 의무물자, 둘째로 민방위, 셋째로 민간인을 위한 구호(救護) 등과 같이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568. 긴급수송

지역적으로 권한있는 지휘관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필요한 긴급수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순위는 관련 민간당국과의 직접 협력을 통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569. 지휘책임

군과 민간의 요원, 수송수단 및 위치 등에 관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상하관계, 협력관계, 민간목적을 위한 임무의 기간, 수송수단에 대한 민간인과 군요원의 혼합배치, 위장요건 등 지휘책임이 확립되어야 한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

제 1 절 전쟁포로

570. 원칙 (G.III, 19)

전쟁포로는 신속히 전투지역으로부터 후송되어야 한다.

571. 후송조건: 원칙 (G.III, 20)

후송은 인간적이며 억류된 군대에 대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행해질 것이다 (예: 요원운송수단, 트럭 등).

572. 후송조건: 안전 (G.III, 19, 20)

전쟁포로는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전쟁포로의 안전은 후송도중 보장되어야 한다.

573. 후송조건: 보호 (G.III, 13)

전쟁포로는 후송도중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폭행, 협박, 모욕행위 및 공공연한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74. 후송조건: 보호 (G.III, 20)

후송도중 전쟁포로에게 충분한 식량과 음료수, 필요한 피복과 의무를 공급하여야 한다.

575. 후송조건: 임시수용소 (G.III, 20)

만약 전쟁포로의 후송도중 임시수용소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체재는 가급적 짧아야 한다. 임시수용소에서의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는 정규수용소에서의 그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576. 심문 (G.III, 20)

전쟁포로는 후송도중 정보요원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전쟁포로는 단지 그의 신분에 관한 자료, 말하자면 1)성명, 2)계급, 3)생년월일, 4)군번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사항 등 만을 진술하도록 강요될 수 있을 뿐이다.

577. 신분의 입증: 원칙 (G.III, 17)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전쟁포로의 신분이 입증되어야 한다.

578. 신분의 입증: 불능 (G.III, 17)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을 진술할 수 없는 전쟁포로는 의무대에 넘겨야 한다.

579. 신분의 입증: 거부 (G.III, 17)

의도적으로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신분자료를 제공하기 거부하는 전쟁포로는 그의 계급 또는 지위에 따른 특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580. 전쟁포로명부 (G.III, 20)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빨리, 포획된 전투원 명단은 확인되어 적절한 계통을 따라 국가포로정보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제 2 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581. 원칙 (G.I, 15; G.II, 18; G.III, 19; G.P.I, 8, 10)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전투지역으로부터 즉시 후송되어야 한다. 난선자가 구조된 경우 건강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아플 때에는

각 경우에 따라 상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82. 후송계통 (G.I, 15; G.II, 18; G.III, 19; G.P.I, 10)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조난당한 군요원은 일반적으로, 즉시 군의무 후송계통을 따라 처치되어야 한다.

583. 일시억류 (G.III, 19)
부상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후송을 계속하는 경우 더 큰 위험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후송을 중지하고 일시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

584.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조난당한 적 전투원
(G.I, 14; G.II, 14)
체포된 적 전투원으로서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조난당한 자는 전쟁포로로서, 후송도중 전쟁포로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다.

585. 전함에의 인도 (G.II, 14)
전함은, 적절한 시설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병원선, 상선 또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조난당한 군요원을 그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86. 중립국 전함 또는 군항공기 탑승자 (G.II, 15)
중립국전함 또는 군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또는 조난당한 군요원은 그 중립국의 권한내에 있고 거기서 억류해야 한다(제10편 제2장 제4절을 보라.).

587. 보고 (G.I, 16; G.II, 19)
전에 행해지지 않았으면, 신분에 관한 자료,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특징 등 부상자나 병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자료는 기록되어야 한다.
제 3 절 사망자

588. 육상의 시체 (G.I, 17)

즉석에서 매장되거나 화장되지 않은 시체는 그의 군대가 지나거나 머물고 있는 곳으로 후송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그 시체에 반쪽 인식표 또는 이중 인식표를 남겨놓음으로써 쉽게 발견되고 인식되며, 육지에서의 행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편 제2장 제3절을 보라.).

589. 해상에서 육지로 후송하는 시체 (G.II, 20)

선박으로부터 육지로 후송하는 시체는 육지에서의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제6편 제2장 제3절을 보라.). 시체를 양륙하는 사람은 개인소지품을 모아서 배에 잘 보관하거나 적절하게 후송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90. 유골 (G.I, 17)

유골은 적절한 계통을 통하여 분묘등록소까지 후송되어야 한다.

591. 개인소지품 (G.I, 16; G.II, 19)

신분증을 비롯한 개인소지품은 적절한 계통을 통하여 국가포로정보국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사망의 보고를 위한 계통 또는 다른 적절한 계통을 따라야 한다.

592. 보고: 원칙 (G.I, 16; G.II, 19)

사망에 관한 보고 및 기타 후속조치는 적절한 계통을 통하여 국가포로 정보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593. 보고: 매장에 대한 상세 (G.I, 17)

매장, 묘지 및 화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적절한 계통을 통하여 분묘등록소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 4 절 적 군의무요원

594. 원칙 (G.I, 28; G.II, 37; G.III, 33) 110 100 100 100
적 군의무요원에 대한 후송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대한 의무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즉시 행해져야 한다.

595. 후송계통 (G.I, 28; G.II, 37)
적 군의무요원에 대한 후송은 부상당하거나 아프거나 조난당한 군요원과 같은 계통을 통하여 후송되어야 한다.

596. 의무활동 (G.I, 28; G.II, 37)
후송도중 의무지원을 위하여 적 군의무요원을 부를 수 있다.

597. 임시 의무요원 (G.I, 29)
임시 적 군의무요원은 의무후송계통이 아닌 예컨대 보급계통을 통하여 후송될 수 있다.

제 5 절 적 군종요원

598. 원칙 (G.I, 28; G.II, 37)
적 군종요원에 대한 후송은 정신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들이 더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대로 바로 하여야 한다.

599. 유추적용 (G.I, 28; G.II, 37)
적 군의무요원의 후송에 대한 규정들은 적 군종요원의 후송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제 6 절 적 군사목적물

600. 전리품 (G.III, 18)
전리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후송은 보통 보급선을 따른다. 후송도중 포획된 자들로부터 제거된 무기, 탄약(등의) 군사장비는

전리품으로 되어 보급선에 전해진다.

601. 신분확인 자료

사망자 또는 다른 곳에서 발견된 인식표나 신분증 등 신분확인자료들은 요원 등 적절한 계통을 통해 국가포로정보국에 전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602. 이동(移動)의무자재

적의 이동의무자재는 군부상자, 병자, 난선자와 같은 계통을 따라 후송되어야 한다.

603. 의무수송수단

적의 군의무수송수단은 그것들이 의무임무에 제공되고 있는 한 의무후송계통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604. 종교물

적 군종목적물은 이에 대응하는 군의무자재와 같이 유사하게 후송되어야 한다.

제 3 장 보 급

제 1 절 보급원칙

605. 원칙
종교적 또는 의무적 목적으로 보급된 것이 아닌 물건으로서 군대에 보급된 물건은, 그것들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된 수송수단이나 요원에 상관없이 군사목적물이 된다.

606. 직접조달

군사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구매나 징발 등 직접적인 조달을 통해 보급된 물건은 군대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 군사목적물이 된다.

607. 민간수송
민간요원이나 민간수송수단에 의해 수송된 보급물자는 그 수송자들을 군사목적물에 대해 야기되는 위험에 드러내는 것이다.

608. 보급로
군보급로와 수송은, 산악지대에서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전략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을 전투행위의 효과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609. 하역
군요원과 민간요원 또는 군사수송수단과 민간수송수단 사이의 하역은 신속하게, 특별하역구역 등과 같이 군사목적물 및 민간목적물로부터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 2 절 의무보급

610. 원칙
군의무보급은 원칙적으로 의무보급로를 따라 의무요원과 의무수송수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611. 직접조달
의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의무임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 또는 징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조달한 물건은 적어도 군의무요원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부터 군의무자재가 된다.

612. 하급부대의 경우
단 하나만의 군수계통(軍需系統) 밖에 없는 하급의 부대의 경우에는 지휘관이 의무보급을 다른 것들과 명백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제 3 절 종교물의 보급

613. 원칙
군인을 위한 종교물은 이에 대응하는 의무자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614. 직접조달

종교용으로 사용하거나 종교적 임무수행에 제공되기 위하여 구매 또는 징발 등 직접조달된 물건은 적어도 군의무요원 또는 군종요원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 종교물이 된다.

제 4 장 의무수송

제 1 절 의무수송원칙

615. 원칙
의무수송은 의무보급 및 후송을 위한 의무계통을 따라 행한다. 하급부대에서는 지휘체계를 따른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무수송은 군사목적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행해져야 한다.

616. 식별 (G.I.22; G.II.35; G.P.I.18; G.P.I. Annex I)
명백한 신호의 정확한 사용과 식별표지의 가능한 사용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호 및 표지의 사용은 전술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예: 앞이 톡터져서 잘 보이는 지역에서는 단지 가까이서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수송편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호를 사용한다든가, 주어진 상황에서 금지되거나 또는 특정장소 및 기간으로 제한된 신호의 사용 등).

617. 무기의 사용 (G.I, 22; G.II, 35; G.P.I, 13, 65)
일반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자는 의무요원이나 의무수송을 수행하거나
호송하는 전투원들의 무기사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무기사용은 전술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예: 무장한 의무요원
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제한을 전투원들에게도 가하는 특별지침을 내리
는 것).

618. 임시수송 (G.P.I, 8)
임시 의무수송은 즉흥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임시 의
무수송에 사용될 수송수단은, 예컨대 들것으로 사용할 기구, 준비된 식
별신호, 특히 항공기의 경우에는 식별표지의 사용 등, 그 목적을 위하
여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가능한한 영구적 또는 임시적 의무요원이 의무수송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임시 의무수송의 경우는 매번 명확한 서면명령이 발행되어야 한
다.

제 2 절 육상 의무수송

619. 원칙
육상에서의 의무수송수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 1) 의무요원 (예: 들것을 운반하는 자)
- 2) 의무지원에 속하는 동물 (예: 산악 의무수송대의 경우)
- 3) 육상의무차량

620. 전투형 차량

전투형 차량이 의무수송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는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전투용 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식별방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
다 (예: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큰 식별표지, 전술적 필요
에 따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식별표지).

621. 갈아타는 지점

부상자, 병자 또는 난선자를 바다나 공중으로부터 육상의 수송수단에
옮겨 태우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그 갈아타는 지점에 관한 책임이
명백히 확립되어야 한다.

식별신호나 식별표지 및 무선통신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갈아타는 지점
이 위치한 지역의 지휘관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제 3 절 해상 기타 수상(水上)에서의 의무수송

622. 원칙

해상 또는 다른 수상의 의무수송수단은 의무선박이 된다. 대형선박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에서의 의무수송은 종종 육상에서와 유사한 장비와
주의를 포함한다.

623. 통고: 병원선, 해안구조선 (G.II, 22, 24, 25, 27)

병원선과 해안구조선의 이름 및 설명은 그 사용 전에 교전국측에 통보
되어야 한다(예컨대 10일 전 통보).

이러한 통고는 등록된 전체 톤수, 이물에서 고물까지의 길이 및 둑과
굴뚝의 갯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24. 통고: 기타 의무선박 (G.P.I, 23)

교전국은 다른 충돌당사국에 대해 항해하는 기타 의무선박, 특히 전체
トン수가 2000톤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 그 이름, 설명, 시간, 항로, 예상
속도 등을 미리 통고할 수 있고 그 신분확인에 쓰여질 수 있는 다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돌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의 접수를 확
인하여야 한다.

625. 군사적 대응방법: 병원선과 해안구조선에 대하여 (G.II, 31)

교전국은 상대국 병원선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일정경로를 택할 것을 명
령할 수 있고, 무선 기타의 통신수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술적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교전국은 병원선이나 해안구조선의 구조를 거부할 수 있다.

626. 군사적 대응방법: 기타 의무선박에 대하여 (G.P.I. 23)

해상의 어떤 군함도 기타 선박으로 하여금 정지하거나 접근금지케 하거나 일정한 경로를 택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들은 그위에 타고 있는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의 의료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627. 임시 의무장비 수송수단 (G.II. 38)

의무목적을 위하여 용선(備船)된 선박은 그 항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충돌당사국 측에 통고되고 적측도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오로지 군부상자와 병자, 질병의 예방을 위한 장비의 수송 등만 허용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측은 그 화물선에 승선할 권한을 보유하나, 수송되는 장비를 포획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러한 화물선은 의무선박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의무지원에 관한 구별신호 또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제 4 절 공중 의무수송

628. 원칙

항공수단에 의한 의무수송은 공중의무수송이 된다. 의무항공기의 사용은 적군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지역상공과 그 접촉지역상공의 비행에 대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629. 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지역 (G.P.I. 25)

적군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지역상공을 비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의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적의 지대공(地對空) 무기의 사정거리내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적에게 통고할 것을 권한다.

630. 접촉지역과 그 유사지역 (G.P.I. 26)

접촉지역과 그 유사지역 상공의 비행에 관해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적과의 합의서를 강력히 권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항공기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비행하는 것이며, 그 경우 의무항공기로 인정된 뒤라도 존중되지 않는다.

“접촉지역”은 상호대치하는 군대의 전방부대가 서로 접촉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지상으로부터의 직접사격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31. 적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 (G.P.I. 27)

적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지역상공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어떤 항공기가 이러한 합의서 없이 위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합의서사항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그 항공기는 스스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의무항공기가 적군에 의해 인정되자마자 적군은 그 항공기로 하여금 착륙, 착수(着水), 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들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의무항공기는 공격당하기 전에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632. 부상자와 난선자를 위한 수색 (G.P.I. 28)

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 또는 접촉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의무항공기는 사전 합의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자나 난선자의 수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633. 통고와 합의서 (G.P.I. 29)

통고와 합의서는 제안된 의무항공기의 숫자와 비행계획 및 식별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교전국은 통고와 합의서 내용이 관련 부대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34. 검색 (G.P.I. 27, 30)

적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지역 또는 통제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의무항공기는 검색을 위하여 착륙 또는 착수하도록 명령될 수 있다. 의무항공기는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635. 암류 (G.P.I. 30)

검색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항공기는 암류될 수 있다.

- 1) 의무항공기가 아닌 사실
- 2) 적에 대한 군사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예:정보, 무기 등)
- 3) 합의서 없이 또는 합의서 내용을 위반해서 비행한 사실

암류된 항공기는 전리품이 된다.

제 8 편 후방지역²⁾

서 론

이 편에서는 보급계통이 시작되고 후송경로가 끝나는 곳 및 민사문제가 특히 중요성을 갖고 형사문제는 모두 해결된 곳에 관련된 전쟁법상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제 1 장 군수기지는 군수원칙, 군사보급 및 정비 기지, 군의무지원기지(군병원, 의무보급 및 정비시설)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취급은 억류의 종료와 송환 등을 포함한 후송된 모든 종류의 사람과 물건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민사사항은 외국인 거주자 및 외국자유영토에서의 민사문제에 관하여 민간당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형사사항은 전방부대에서 후방부대로 돌려진 또는 후방지역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와 그에 대한 사법적 처리에 관한 것이다.

2) "후방지역"은 명확한 전술적 의미나 확립된 경계가 정해져 있는 않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뒷쪽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바깥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제3편 제 3장 제2절 참조).

제 1 장 군수기지

제 1 절 군수원칙

636. 원칙

전쟁법과 관련해서 군수기지는 다음과 같다.

- 1) 군보급 및 정비 기지
- 2) 군의무지원기지
- 3) 전쟁포로수용소

637. 위치선정에 관한 일반정책

일반군수책임자는 전방기지 및 중간기지를 포함한 군수기지의 위치선정에 관한 일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기지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군사목적물과 의무 또는 민간목적물간의 충분한 거리유지
- 2) 기지간의 신속한 교통가능성

638. 감독과 조정

일반군수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군수기지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1)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예: 음식, 의복, 의무품, 종교목적물 등)
- 2) 의무 및 군종요원(예: 잔류하고 있는 포획된 요원, 송환되거나 석방될 요원, 캠프와 병원 간의 잔류요원 교환, 충원될 자체증원요원)
- 3) 전쟁포로의 억류종료(예: 중립국으로의 이송, 심하게 부상당하거나 아픈 자의 송환)
- 4) 어떤 자의 수중에 떨어졌으나 전쟁전쟁포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민간인(예: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가 잡힌 경우)의 처우
- 5) 포획한 물건(예: 전리품, 포획한 의무용품, 나포한 상선 및 민간 항공기 등)의 정확한 사용과 할당

639. 기지에의 접근

군수기지에의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과 물건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군사목적물과 의무 또는 민간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구별은 존중되어야 한다.

640. 기지이동

군수기지에 대한 일반정책은 기지이동과 대체기지의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41. 군사기지간의 교통

제7편 제1장의 수송행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동에도 적용된다.

- 1) 군수기지 간
- 2) 군수기지와 이에 비견되는 민간기지 또는 장소 간

642. 군사기지에 대한 보급

제7편 제3장 민간인으로부터의 직접조달을 포함하여 보급에 관한 규정들은 군수기지에 대한 보급에도 적용된다.

643. 포획된 사람과 물건: 중간기지에의 유치 (G.III, 20, 24)

제8편 제2장 후방지역에서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전방 또는 중간 군수기지와 이에 비견되는 장소에도 적용된다.

644. 포획된 사람과 물건: 기지간의 이동 (G.III, 19, 20)

제7편 제2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에 관한 규정은 어떤 군수기지 또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그러한 사람을 이동할 때에도 적용된다.

645. 의무지원: 원칙

일반군수책임자는 그의 책임범위내에 있는 의무지원체계(예: 식별, 위장, 경비 및 무기의 사용, 일시적 의료임무 등)에 따라 후방지역에서의 의무지원에 관한 정확한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646. 의무지원: 가능한 체계

후방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무지원체계가 가능하다.

- 1) 완전히 분리된 군의무지원과 민간의무지원
- 2) 민간인 및 군인 부상자와 병자를 군 및 민간의무시설에서 서로 받아들이도록 상호협력하는 체계
- 3)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군과 민간의무기관이 합동하는 체계

647. 의무지원: 군·민 합동 또는 협동 지원

군 및 민간의무시설이 합동 또는 협동으로 지원하는 곳에서는 모든 지원관은 다음사항을 확립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1) 명확한 지휘체계 (예: 합동으로 운영되는 의무시설에 있어서 고립된 의료요원에 대한 지휘 등)
- 2) 군의무시설과 민간시설간을 이동하거나 활동하는 의무요원에 대한 명료한 지시
- 3) 군 및 민간의무요원에 대한 군 및 민간부상자·난선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전쟁법 규정의 전면적인 적용(예: 민간병원의 부상전쟁포로 등)

648. 종교지원

일반군수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전쟁포로에게 허용된 종교행위를 허용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 1) 포획된 적 군종요원 또는 자격있는 자에 대한 종교활동의 허용
- 2) 적절한 경내에서의 종교의식 거행 허용
- 3) 도서, 신앙물 등 종교물의 보급 또는 적어도 보급의 허용

649.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일반군수책임자는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같은 중개자들의 활동 (예: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 방문, 형사소추를 당한 경우의 원조, 구조)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650. 통신, 행정계통

일반군수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 사이의 전쟁법과 관련된 통신과 행정계통의 작동을 확립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1) 군수기지와 국가기관 (예: 국가포로정보국, 분묘등록소)
- 2) 군수기지와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 (예: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중앙포로정보국)

제 2 절 군 보급 및 정비 기지

651. 원칙

의무자재를 제외한 물품으로서 군대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을 생산, 변형, 보관하는 군보급 및 정비 기지는 군사목적물이 된다.

652. 민간인 사용

군보급 및 정비 기지에 있는 물품이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할당되거나 공개된 경우에는 그것들은 그 기지가 노출된 것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한다.

653. 민간인 구성원

군보급 및 정비 기지에서 일하도록 임무를 받은 민간인 구성원은 그 기지의 군 구성원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한다. 근무의 시간에는 그들은 기지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654. 기지간 수송

민간수송수단과 민간인이 운행하는 수송수단이 군 보급 및 정비 기지 부근에 놓여 있거나 운행할 때에는 그 기지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한다.

655. 동시출현

군 구성원과 민간인 구성원이 같은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656. 하역장소

군수송수단과 민간수송수단 간에 짐을 부리거나 옮겨 실을 지역이나 장소는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군과 민간인 구성원 및 수송수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657. 의무보급 및 정비 기지들

의무보급 및 정비기지는 원칙적으로 비의무물자를 위한 군 보급 및 정비기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군사목적물과 민간목적물의 구별에 관한 원칙은 의무보급 및 정비 기지와 군 보급 및 정비 기지의 구별에도 적용된다.

제 3 절 군 의무지원기지

658. 원칙

군병원과 다른 후방지역 의무시설 (예: 의무창고와 보급 및 정비기지 등)은 군사목적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그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659. 식별표지의 사용 (G.P.I, Annex)

식별표지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크고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작전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후방지역에서는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한 크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60. 경비

보병소대와 같은 전투부대가 대단위 의무지원기지를 경비하는 임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시가 행해져야 한다.

661. 동시출현

전투요원과 군 의무요원 및 수송수단이 동시에 군 의무지원기지나 그 주위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예: 경비, 부상자와 병자의 처리, 짐부리기)에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662. 군병원의 전쟁포로

전쟁포로를 받는 군병원은 전쟁포로 수용시설의 위치와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처리

제 1 절 전쟁포로

663. 처리원칙: 일반 (G.III, 12, 13, 21)

전쟁포로는 모든 상황에서 아껴지고 인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쟁포로는 그들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든 아니든 그들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 있는 억류국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664. 처리원칙: 보호 (G.III, 13)

전쟁포로는 특별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65. 처리원칙: 존중 (G.III, 14)

전쟁포로는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666. 처리원칙: 여자, 어린이 (G.III, 14; G.P.I, 75-77)

여자와 어린이는 그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667. 처리원칙: 평등 (G.III, 16)

모든 전쟁포로는 다음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1)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과 제네바협약에 관한 1977년 제1의정서의 계급 및 성별, 나이에 관한 규정
- 2) 그들의 건강, 나이, 전문자격 등의 이유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되

는 특별대우

668. 처리원칙: 전쟁포로 부양 (G.III,15) 양국은 전쟁포로에 대해 그들의 건강상태에 의해 요구되는 부양과 의무적 배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669. 억류장소: 원칙 (G.III,21) 양국은 전쟁포로를 억류할 수 있다. 억류는 원칙적으로 전쟁포로수용소에서 하여야 한다.

670. 억류장소: 교도소 (G.III,22)

전쟁포로는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도소에 억류될 수 있다.

671. 억류장소: 전투지역이 아닐 것 (G.III,23) 전쟁포로는 어느 때라도 전투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거나 억류될 수 없다.

672. 억류장소: 비위생적인 곳이 아닐 것 (G.III,22)

비위생적인 지역이나 기후가 건강에 해로운 곳에 억류되어 있는 전쟁포로는 가급적 빨리 더 나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673. 수용소: 준비

전쟁포로수용소는 임시변통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일반군수책임자는 평시에 미리 적절한 준비조치(예: 수용소위치계획, 조직, 수용소근무가 예정된 요원에 대한 훈련)를 취하여야 한다.

674. 수용소: 육지에 위치할 것 (G.III,22) 임시적인 여건이 더 나은 다른 곳(예: 유달리 추운 기후에서 육지의 성긴 텐트보다는 데워진 선박에 설치된 수용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수용소는 육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675. 수용소: 전투행위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G.III,23) 전쟁포로수용소는 전투행위에 노출되는 곳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투행위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수용소 또는 적어도 전쟁포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

676. 수용소: 위치에 관한 정보 (G.III,23)

억류국은 이익보호국과 같은 중개자를 통하여 적국이나 종립국 등 관계국에게 전쟁포로수용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77. 수용소: 위생 (G.III,22)

전쟁포로수용소는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78. 수용소: 대피소 (G.III,23)

전쟁포로수용소는 공습과 다른 전쟁의 위험에 대하여 그 지방의 민간인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대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679. 수용소: 담장, 경비 (G.III,21)

전쟁포로수용소는 담장을 둘러칠 수 있고, 경비될 수 있다.

680. 수용소: 표시 (G.III,23)

전쟁포로수용소는 군사상 고려로서 허용되는 때에는 언제나 낮에 공중에서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PW(Prisoner of War의 약자) 또는 PG(Prisonnier de Guerre(불어) Prisionero de Guerra(스페인어)의 약자임)라는 문자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당사국은 다른 표시방법을 합의할 수 있다. 오로지 전쟁포로수용소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681. 임시수용소 (G.III,24)

반영구적인 임시수용소나 심사수용소는 정규의 전쟁포로수용소와 같은 조건으로 설비되어야 하며, 그 안에 있는 전쟁포로들은 정규전쟁포로수용소 내에서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682. 수용소도착: 신분확인 (G.III, 17)

후송동안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전쟁포로는 수용소에 도착하는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

683. 수용소도착: 전쟁포로명단 (G.III, 20)

후송동안에 전쟁포로명단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포획된 전쟁포로명단은 자체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684. 수용소도착: 위심스런 지위 (G.III, 5; G.P.I, 45-47)

만약 포획된 사람이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권한있는 재판소에 의해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685. 수용소도착: 전쟁포로통지표 송부 (G.III, 70; G.III, Annex IV, B)

수용소에 도착한 후 1주일 이내에 전쟁포로는 그 가족 및 중앙정보국에 전쟁포로통지표를 직접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전쟁포로통지표에는 전쟁포로된 사실과 주소, 건강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686. 숙소: 원칙 (G.III, 25)

전쟁포로수용소의 숙소는 동일지역에 숙영하는 억류국의 군대와 동일하게 유리한 조건이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조건은 전쟁포로의 관습과 풍속을 참작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건강에 해롭지 아니하여야 한다.

687. 숙소: 엄중한 감금 (G.III, 25)

엄중한 감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1) 형벌 또는 징계벌에 관련되는 규정에 의한 경우.

2) 전쟁포로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감금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동안.

688. 숙소: 국적에 따른 집결 (G.III, 22)

전쟁포로는 그들의 국적, 언어와 관습에 따라 집결되어야 한다. 같은 군대에서 복무한 전쟁포로는 그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분리될 수 없다.

689. 숙소: 여자 (G.III, 25; G.P.I, 75)

여자숙소는 남자숙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들은 여자의 직접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690. 숙소: 어린이 (G.P.I, 77)

어린이는 가족단위로 수용되지 않는 한 어른숙소와 분리되어야 한다.

691. 법과 질서: 수용소장(G.III, 39)

전쟁포로수용소는 억류국 정규군대에 속하는 책임있는 장교의 직접 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692. 법과 질서: 전쟁법원문 비치 (G.III, 39, 41)

모든 전쟁포로수용소에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과 규정, 명령, 통고 및 전쟁포로의 행위에 관한 모든 간행물을 전쟁포로가 사용하는 언어로써 게시하여야 한다.

693. 법과 질서: 적용법 (G.III, 82)

전쟁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694. 법과 질서: 민사상(民事上)의 행위능력 (G.III, 14)

전쟁포로는 그가 전쟁포로될 때에 누리던 완전한 민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695. 법과 질서: 계급, 경례 (G.III, 39, 44)
전쟁포로는 그들의 계급과 나이에 따라 대우받는다. 그들은 억류국의 상급장교에 대해서만 경례하여야 한다.

696. 법과 질서: 일정한 범위내의 감금 (G.III, 21)
전쟁포로는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697. 법과 질서: 무기사용 (G.III, 42)
전쟁포로, 특히 도주하고 있는 전쟁포로에 대한 무기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서 이에 앞서 그 상황에 적합한 경고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698. 법과 질서: 요청 (G.III, 78)
전쟁포로는 그 권력하에 그들이 있는 군당국에 대하여 억류조건에 관한 요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699. 법과 질서: 대표자 (G.III, 78-80)
전쟁포로 대표자들은 군당국 및 외부기관에 대하여 그 동료 전쟁포로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예: 보호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가능한 이의제기).
전쟁포로는 그들의 대표를 자유로이 선출할 수 있다. 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장교가 전쟁포로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

700. 징계: 권한 (G.III, 96)
전쟁포로수용소장은 징계권이 있다. 그 권한은 부소장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다른 장교가 행사할 수 있다.

701. 징계: 징계벌의 종류 (G.III, 89)
전쟁포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0일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전쟁포로가 받을 선지급 봉급과 노임의 100분의 50 이하의 별금

- 2) 위 협약에 정하는 대우 이외에 부여되고 있는 특권의 정지
- 3) 1일 2시간 이내의 노동
- 4) 구금

702. 징계: 징계벌의 조건 (G.III, 89, 90)
징계벌은 어떤 경우에도 비인간적이거나, 잔혹하거나, 또는 전쟁포로의 건강에 위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703. 징계: 도주 (G.III, 91, 92)
도주를 기도하려는 도중에 다시 잡힌 전쟁포로는 오로지 징계벌에 의해서만 처벌되어야 한다.

704. 징계: 징계벌의 집행 (G.III, 88)
전쟁포로에 대한 징계벌은 억류국 군대의 동일 계급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705. 보급, 의복 (G.III, 26-28)
매일의 기본급식과 의복은 양과 질이 기후에 맞아서 전쟁포로로 하여금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706. 의무지원: 원칙 (G.III, 29-33)
의무지원은 전쟁포로의 필요에 적합하여야 한다(예: 수용소의 청결, 건강과 위생상태, 적합한 양호실, 월간 신체검사).

707. 의무지원: 요원 (G.I, 28; G.II, 37; G.III, 32, 33)
포획되어 남아 있는 적 군의무요원은 전쟁포로, 가급적이면 자국군대에 속하는 전쟁포로를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 의과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위생병인 전쟁포로는 자국군대에 속하는 전쟁포로를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08. 의무지원: 혼성의무위원회(G.III, 112, 113; G.III, Annex II)

흔성의무위원회는 병자와 부상자를 진단하여 그들에 대해 모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흔성의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중립국소속으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2명

2) 억류국에 의해 임명된 1명

709. 종교행사 (G.III, 34)

종교행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710. 종교의식 (G.III, 34-37)

전쟁포로는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군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규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교물의 사용과 예배참석의 자유를 포함한다.

711. 운동, 오락 (G.III, 38)

전쟁포로에게는 운동과 지적(知的), 교육적, 오락적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712. 재원(財源) (G.III, 58, 60, 61, 64-66)

억류국은 모든 전쟁포로에게 월급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각자 구좌를 가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713. 노동: 원칙 (G.III, 49, 62)

억류국은 전쟁포로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적합한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사관들은 오로지 감독일만 요구될 수 있다. 장교들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714. 노동: 성격 (G.III, 50, 51)

전쟁포로에 의해 행해지는 일은 군사적인 성격이나 목적을 떨 수 없다. 그들의 일하는 여건은 억류국 국민들에 비해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715. 노동: 위험 (G.III, 52)

지원자가 아닌 한 어떤 전쟁포로도 위험한 일에 고용될 수 없다. 광산의 제거나 기타 그 비슷한 일들은 위험한 일로 간주된다.

716. 통신, 구호: 원칙 (G.III, 71-73)

전쟁포로는 편지와 카드를 주고 받으며 개인적인 소포를 받거나 공동의 화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717. 통신, 구호: 검열 (G.III, 76)

전쟁포로의 서신검열과 탁송품검사는 가급적 빠르고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18. 법률문서 (G.III, 76)

법률문서(예: 위임장, 유언장)의 준비, 전달과 시행은 촉진되어야 한다.

719.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G.III, 105, 126)

이익보호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전쟁포로가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의 접근

2) 이동중인 전쟁포로 방문

3) 입회인 없는 상태하의 전쟁포로 면담

4) 자유로운 방문지 선택

5) 법적 소추를 당한 전쟁포로 원조

720. 이송: 다른 충돌당사국에 대한 이송 (G.III, 12)

전쟁포로는 억류국에 의해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위의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이 확인된 뒤에만 이송될 수 있다.

721. 이송: 중립국에 대한 이송 (G.III, 109-111; G.III, Annex I)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은 적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중립국에서의 전쟁포로

수용 (예: 장기간 억류된 전쟁포로, 더 나은 간호여건을 누릴 부상자 또는 병자)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2. 억류의 종료: 적대행위중, 도주의 성공 (G.III, 91)

억류는 도주의 성공으로 종료된다. 전쟁포로의 도주는 다음의 경우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전쟁포로가 그가 속하는 군대 또는 동맹국군대에 복귀한 경우
- 2) 전쟁포로가 억류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떠난 경우
- 3) 전쟁포로가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동맹국의 선박에 복귀한 경우

723. 억류의 종료: 적대행위중, 직접송환 (G.III, 109, 110; G.III, Annex)

교전당사국은 중병 및 중상의 전쟁포로(예: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당하거나 아파서 정신적 신체적 적합성이 현저하게 영구히 감퇴된 전쟁포로)를 그 숫자와 계급에 불구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때까지 치료한 뒤에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대행위의 계속중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전쟁포로도 직접 송환될 수 없다.

또한 교전당사국은 장기간 억류되었던 전쟁포로로서 신체건강한 전쟁포로를 직접 송환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

724. 억류의 종료: 적대행위의 종료 (G.III, 118)

전쟁포로는 적대행위의 종료와 더불어 그 즉시 석방되어 송환되어야 한다.

725. 외부기관파의 연락 (G.III, 5, 8, 9, 120-122)

전쟁포로수용소 행정당국은 외부기관(예: 국가포로정보국, 묘지등록소,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과의 필요한 연락을 보장하여야 한다.

726. 보고: 초도보고 (G.I, 16; G.II, 19, G.III, 70, 94, 120, 122)

전쟁포로명단과 포획자의 신원에 관하여 기록된 자료(예: 전쟁포로통지

표,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 신분의심자에 대한 특별보고)는 국가포로정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727. 보고: 보충보고 (G.III, 122)

국가포로정보국은 전쟁포로의 이송, 석방, 송환, 도주, 병원입원과 사망에 관한 보충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부상자와 병자

728. 원칙 (G.I, 12; G.II, 12; G.P.I, 10, 11)

부상자와 병자는 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간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729. 의과수술의 거부 (G.P.I, 11)

군대의 권력하에 있는 부상자와 병자는 어떤 의과수술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요원은 환자가 서명 또는 인정한 서면진술서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0. 이송

부상자와 병자를 다른 의무시설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추천된 경우 할 수 있다.

731. 부상당하거나 아픈 전투원 (G.I, 5; G.II, 4)

부상당하거나 아픈 전투원으로서 포획된 자는 전쟁포로로 남는다. 전쟁포로수용소 밖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예: 호송하의 이송, 병원내의 경비)를 취할 수 있다.

732. 기록 (G.P.I, 11)

의무기록은, 1)군대권력내의 사람이 행한 수혈을 위한 헌혈이나 이식수술을 위한 피부의 기증, 2)전쟁포로와 기타 충돌행위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관한 치료과정을 담아야 한다.

제 3 절 전쟁포로의 사망

733. 유언 (G.III, 120)

전쟁포로의 유언장은 자국법에 의한 효력요건을 갖추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전쟁포로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전쟁포로가 사망한 모든 경우에 그 유언장은 국가포로정보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734. 의학적 검사 (G.III, 120)

사망과 신원확인을 위한 검사는 매장 또는 화장 전에 행해져야 한다.

735. 매장, 화장 (G.III, 120)

매장과 화장은 상황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사망자의 종교의식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같은 국적의 사람끼리 같은 곳에 매장하여야 한다.

736. 묘지, 유골 (G.III, 120)

묘지는 존중되고, 적절히 유지되며,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유골은 묘지등록소로 보내져서 보관되어야 한다.

737. 보고: 일반, 사망증명 (G.III, 120; G.III, Annex IV, D)

사망보고와 후속조치에 더하여, 전쟁포로로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자명단은 지체없이 국가포로정보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나 명단에는 신원에 관한 특기사항, 사망일시와 장소, 매장일시와 장소 및 묘지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38. 보고: 매장에 관한 특기사항 (G.III, 120)

매장, 묘지, 화장에 관한 특기사항과 후속적인 시체의 이송 및 유품은 묘지등록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739. 휴대품 (G.I, 16, 17; G.II, 20; G.III, 122)

이중인식표의 한 쪽, 근친자에게 중요한 문서, 금전과 일반적으로 고유의 가치 또는 정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은 봉인된 봉지로서 국가포로정보국에 보내져야 한다.

제 4 절 적 군의무요원

740. 원칙 (G.I., 28; G.II, 37)

전쟁포로가 아닌 포획된 적 군의무요원은 송환되어야 한다.

741. 예외 (G.I, 28; G.II, 37)

적 군의무요원은 건강상태와 전쟁포로의 숫자가 요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억류할 수 있다. 군의무지원에 관한 일반적 책임자는 억류된 적 군의무요원의 필요사항을 청취하여야 한다.

742. 송환: 조속한 송환 (G.I, 30; G.II, 37)

억류가 불가피하지 않은 적 군의무요원은 그들의 복귀에 필요한 도로가 열리고 군사적 요구가 허용하는 대로 빨리 송환되어야 한다.

743. 송환: 요원선발 (G.I, 31; G.II, 37)

송환을 위한 적 군의무요원의 선발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관계없이 행해져야 하나, 포획된 순서와 건강상태에 따라 하여야 한다.

744. 억류 (G.I, 28; G.II, 37; G.III, 33)

억류된 적 군의무요원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모든 조항으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다.

745. 임시 군의무요원 (G.I, 29)

전쟁포로인 적의 임시 군의무요원은 필요가 있는 한 그들의 의료임무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 5 절 적 군종요원

746. 원칙 (G.I, 28; G.II, 37)

전쟁포로가 아닌 포획된 적 군종요원은 송환되어야 한다.

747. 예외 (G.I, 28; G.II, 37)

적 군종요원은 종교적인 필요성과 전쟁포로의 숫자가 요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억류될 수 있다.

종교지원에 관한 일반책임자 또는 전쟁포로 행정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억류된 적 군종요원의 필요사항을 청취하여야 한다.

748. 준용 (G.I, 28, 30, 31; G.II, 37)

적 군의무요원의 송환과 억류에 관한 조항들은 적 군종요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 6 절 적 군사목적물

749. 전리품 (G.III, 18)

개인의 신분에 관한 서류, 의류, 급식 및 신체보호를 위한 휴대품을 제외한 군사장비는 포획된 사람과 함께 남아서 전리품이 되어 군수계통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750.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G.III, 18)

포획된 개인용품(예: 의복, 급식, 포획된 창고에서 나온 신원확인서류)은 전쟁포로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51. 의무시설 (G.I, 33)

부여된 의무임무를 수행중인 적 군의무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 1) 그 안에 있는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안에 있는 부상자와 병자의 복지를 위한 어떤 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

752. 이동 의무자재 (G.I, 33)

적의 이동 의무자재는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를 위하여 보유된다. 따라서 일반적 군의무지원 책임자는 그 자체의 최종적인 사용을 지정하고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753. 의무수송수단 (G.I, 35; G.P.I, 23, 30)

후송계통을 통하여 도착하거나 다른 곳에서 포획된 적 군의무수송수단으로서 더 이상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리품이 된다. 이 경우 의무용 식별표지는 제거되어야 한다.

754. 종교물 (G.I, 33)

적 군종목적물은 유사한 의무목적물과 비슷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 3 장 민사사항

제 1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755. 원칙

민사사항은 본질적으로 평시에 확립된 정책과 절차에 의해 다루어진다.

756. 지휘책임

모든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기왕에 상급자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는 한) 지시와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립하여야 한다.

1) 민간당국과의 협력

2) 민간인 및 군과 관련된 민간목적물에 대한 활동과 행위

757. 준비조치

전시의 적절한 활동과 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평시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 나라의 군과 민간기구 및 행정당국에 의해서 서로 대응하는 군지휘관과 민간당국이 결정되어야 한다.

758. 민간당국에 대한 조언

협력은 첫째로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민간당국에 대한 조언으로 구성된다 (예: 어떤 전술적 또는 전략적 상황이 허용될 지에 관한 정보, 특별하게 보호받는 물건을 존중할 수 있는 가능성, 문화재의 공격 면제에 대한 철회 가능성, 특별지역과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 제안된 행위).

759.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에 관한 협력은 효과적인 존중과 경비를 위한 준비조치로 이루어진다 (예: 사용의 재검토, 신원확인 방법, 병원으로부터 부상자와 병자를 이동시 가능한 군지원,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의 후송, 비상시의 상호행위에 대한 조언).

760. 보호지대

보호지대(예: 병원지역과 유적지, 비무장지역)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1) 첫째, 추후의 논의를 위한 기초로서의 공통인식 확립
- 2) 둘째, 그 지역의 중요성과 면적, 주변의 길이
- 3) 셋째, 적에 대한 정보를 위한 의제의 확립과 가능하면 적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의제의 확립

761. 주민에 대한 보급과 구호

지휘관은 주민에 대한 군의 보급과 구호를 위하여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사태에 따라 민간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수송수단, 요원, 현병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대와 구호지원을 위한 특정계통 및 식품, 담요, 천막 등 구호물자).

제 2 절 외국인 거주자

762. 원칙 (G.IV, 38)

특별통제와 안전조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거주자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그들에 대한 평시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763. 노동의 강요: 일반 (G.IV, 40)

외국인 거주자는 그가 체류하는 교전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정도 이상으로는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764. 노동의 강제: 적국민(敵國民) (G.IV, 40)

적국민은 급양, 대피, 의복, 수송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군작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만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

765. 영역을 떠날 권리 (G.IV, 35, 36)

전쟁이 개시될 때 또는 진행중에 교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그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66. 타국으로의 이송 (G.IV, 45)

외국인 거주자는 억류국에 의해서 민간인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만 이송될 수 있다.

767. 안전조치: 원칙 (G.IV, 42)

외국인 거주자는 억류국의 안전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가 제한되거나 또는 억류될 수 있다.

768. 보안조치: 결정 (G.IV, 43; G.P.I, 75)

억류나 주거제한 결정은 그 국가의 영역내의 일반적인 정규절차에 따라

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있고 또한 정기적인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769. 억류: 전쟁포로와 유사한 대우 (G.IV, 79-135)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규정은 전쟁포로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다 (본편 제2장 제1절 참조).

770. 억류: 수용소 표시 (G.IV, 83)

억류수용소는 군사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언제라도 주간(晝間)에 공중으로부터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IC"라는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당사국은 다른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민간인 억류장소가 아닌 곳에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없다.

제 3 절 외국 자유영역내의 민사사항

771. 원칙

국가의 자유영역에서 적용되는 민사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자유영역 안에 있는 군대에게도 동등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772. 추가규정과 조치

외국의 자유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타의 추가적인 규정과 조치(예: 행정사항에 관한 주둔군지위협정, 적용가능한 형사입법과 재판권, 관련된 여러 군지휘관 간의 조정)는 그 나라와의 특별한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773. 민간당국과의 협력

외국 자유영역에서의 민간당국과의 협력은 주둔군지위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규칙 또는 특별규정을 따라야 한다. 군지휘관과 민간당국자 간의 대등한 권리여부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774. 외국인 거주자 외국 자유영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본편 제3장 제2절 참조).

제 4 장 형사사항

제 1 절 전쟁범위반

775. 중대한 위반: 원칙 (G.P.I, 85)

중대한 전쟁범위반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그러한 것들은 형사적인 제재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한다.

776. 중대한 위반: 개인에 대한 행위 (G.I, 50; G.II, 51; G.III, 130; G.IV, 147; G.P.I, 85)

다음과 같은 행위는 중대한 전쟁범위반이다.

- 1) 고의적인 살인,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
- 2)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
- 3)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포함한 비인간적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4) 인질
- 5) 위법한 억류
- 6) 점령된 영역내의 주민들에 대한 위법한 추방이나 이송
- 7) 점령국이 자국주민을 점령지역으로 이송하는 행위
- 8) 공정한 정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 9) 전쟁포로나 민간인 송환의 부당한 지연
- 10) 피보호자를 적측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77. 중대한 위반: 물건에 대한 행위 (G.I50; G.II, 51; G.IV, 147)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고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

- 1) 재산에 대한 평범한 파괴
- 2) 재산에 대한 평범한 징벌

778. 중대한 위반: 전술적 행위 (G.P.I, 85)

다음과 같은 공격은 중대한 위반이 된다.

- 1) 전투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공격
- 2) 민간주민 또는 개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
- 3) 지나친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피해를 낼 것을 알면서 행하는 민간 주민과 물건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공격
- 4) 명백하게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위법한 공격
- 5) 방어되지 않는 장소와 비무장지역에 대한 공격
- 6) 지나친 민간피해를 야기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에 대한 공격

779. 중대한 위반: 식별신호와 표지의 배신적 사용 (G.P.I, 18, 66, 85)

다음과 같은 식별신호와 식별표지의 배신적 사용은 중대한 위반이 된다.

- 1)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을 표시하는 식별표지
- 2) 전쟁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타의 표지
- 3) 의무지원과 민방위를 증명하는데 쓰여지는 식별표지

780. 기타의 위반 (H.CP, 28; G.P.I, 87)

기타의 전쟁법 위반행위는 징계법 또는 형벌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

제 2 절 사법절차(司法節次)

781. 지휘관의 의무 (G.I, 49; G.II, 50; G.III, 129; G.IV, 146; H.CP, 28; G.P.I, 87)

자신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 있는 부하나 사람이 전쟁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한 것을 아는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 2) 위반자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절차의 개시

782. 기본적 인권보호 (G.P.I, 75)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규정(제2편 제3장 제3절 참조)들은 모든 형사소추에도 적용된다.

783. 상호부조(相互扶助) (G.P.I, 88, 89)

교전당사국은 중대한 전쟁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사소추절차에 관련하여 서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전당사국은 중립국으로부터도 동일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엔과 협력하여, 그리고 유엔헌장에 따라 서로 도와야 한다.

784. 조사 (G.I, 52; G.II, 53; G.III, 132; G.IV, 149; G.P.I, 90)

교전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해당사국 간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쟁법위반이라고 주장된 사항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예: 국제 사실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제 3 절 전범자의 기소

785. 체포전 행위 (G.III, 85)

전쟁포로가 되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에 의해 소추된 전쟁포로는 비록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786. 추가적인 절차상 요건 (G.III, 82-86, 103-106)

다음과 같은 절차적 요건은 존중되어야 한다.

- 1) 현존하는 국법이 민간법원에 의해 그 국가의 군구성원을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 2)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포획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전쟁법상의 이의 향유

- 3) 신속한 수사
4) 확립된 사법절차, 가능한 판결 및 형량 등에 관한 이익보호국과의 통신

787. 전쟁포로만 처벌가능한 경우 (G.III, 82)
억류국의 법률, 규칙 및 명령이 전쟁포로가 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선언한 경우에, 같은 행위가 억류국 군대구성원에 의해 행해진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이 못되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벌만 부과할 수 있다.

788. 절차의 선택 (G.III, 83)
억류국은 사법적 절차와 징계상의 절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이 최대의 관용을 보이고 또한 가급적 사법상의 조치보다도 징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89. 방어권과 방어수단 (G.III, 105)
피고전쟁포로는 동료 1인의 도움을 받으며 자격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변호되고, 증인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능한 통역인에게 통역시킬 권리가 있다. 억류국은 재판개시 전 적당한 시기에 이러한 권리를 전쟁포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90. 이익보호국에 의한 원조 (G.III, 104, 107)
억류국이 전쟁포로에 대하여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적어도 재판개시 3주전에 피고인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공소사실 및 사건을 취급할 법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선고된 모든 판결은 즉시 이익보호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791. 충성의무 부존재 (G.III, 87)
전쟁포로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억류국은 가능한한 널리, 피고인이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니며 충성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792. 형벌의 감경 (G.III, 87)
억류국은 전쟁포로가 기소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형벌을 자유로이 경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에 정해진 가장 가벼운 형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793. 계급박탈 불가 (G.III, 87)
억류국은 전쟁포로의 계급을 박탈할 수 없으며, 계급장 착용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794. 사형 (G.III, 100, 101)
전쟁포로와 이익보호국은 억류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가급적 빨리 통보받아야 한다. 사형은 이익보호국이 사형을 확인하는 최종판결을 접수한 때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795. 상소 (G.III, 106)
모든 전쟁포로는 억류국 군대의 구성원과 같이, 그에게 선고된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거나 청원할 권리가 있다.

796. 형벌의 집행 (G.III, 88, 108)
유죄판결이 적법하게 선고된 후 전쟁포로에 대해 행해진 선고는 억류국 군대의 동일계급자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과 시설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건강과 인도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97. 복형후의 대우 (G.III, 88)